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4. 4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3월 27일,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3월 27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11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7년 4월 4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택

가. 제안이유

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전통시장의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을 확고한 지원 의지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(안 제1조 ~ 제3조)
- 시장의 구역과 시설물 및 편의시설 등(안 제4조 ~ 제6조)
- 전통시장의 인정 등(안 제7조 ~ 제10조)
- 임시시장의 개설, 신고 등(안 제11조 ~ 제14조)
-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등(안 제15조 ~ 제18조)
- 상인회 설립 및 등록 등(안 제19조 ~ 제25조)
- 시장관리자의 지정 등(안 제26조)
-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관리(안 제27조 ~ 제34조)

- 과태료 부과·징수(안 제35조 ~ 제40조, 별지 제1호 ~ 제3호 서식)
- 시행규칙 위임(안 제41조)
- 시행일, 경과규정(안 부칙 제1조 ~ 제2조)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유준상)

- 마포구는 망원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11개소와 용강동상점가 등 4개의 상점가가 있으며,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 7개소와 준대규모점포 11개로 형성되어있으며,
- 신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 운영과 관련하여 골목상권 침해 및 상인회와의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.
- 최근 마포구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 및 전통시장의 언론홍보 집중으로 기존 전통시장이 관광명소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
- 그에 따른 지속적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시설 부족 등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과 더불어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신경영기법 도입 등 전통시장이 진일보 할 수 있는 활성화대책이 필요한 상황임.
- 이번 조례안 제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동시에 전통시장의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있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,
-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과 수익 발생 시설물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- 아울러 전통시장이 경쟁력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와 상권활성화 구역 요건 범위 지정절차, 관리규정 등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신설 등으로 책임성 강화와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